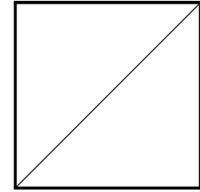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52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의
결
사
항

SCI평가정보(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의결주문

SCI 평가정보(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제이피어반디가 SCI 평가정보(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주)제이피어반디가 SCI 평가정보(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제출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령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별지)

SCI 평가정보(주)의 대주주 변경승인

(주)제이피어반디의 SCI 평가정보(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승인내용

- (주)제이피어반디가 SCI평가정보(주)의 주식 주(9.54%)를 취득하여 SCI 평가정보(주)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함

2. 승인조건

-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승인 신청시 제출한 제반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제이피어반디는 본건 승인 이후 SCI평가정보(주)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승인일 : 2020. 12. 22.

【별첨】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④ ~ ⑫ (생략)

[별표 1의2]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요 건	구 분
<p>1. 대주주가 제9조제7항 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p>	<p>다. <u>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1) <u>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u></p> <p>2) <u>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u></p> <p>3) <u>「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p> <p>4) <u>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u></p> <p>라. <u>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u></p>
<p>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 「자본</p>	<p>가. <u>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u></p>

<p>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인 경우</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u>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u></p> <p>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u>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u></p> <p>라. <u>제1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u></p>
<p>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2. (생 략)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② (생 략)

③ 영 제9조제3항·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 ⑥ (생 략)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 ② (생 략)

③ 영 제9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9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생 략)

[별표 2의2] 대주주의 요건(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요 건	구 분
<p>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p>	<p>가~나. (생 략)</p> <p>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1) <u>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u>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2) <u>「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인 사실.</u>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p>

	<p>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3) <u>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u>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p> <p>(나) <u>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u>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p>
<p>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다.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u>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u></p> <p>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p> <p>(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p> <p>마.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 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1) 유상증자</p> <p>(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p> <p>(3) 내부유보</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p> <p>(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p> <p>(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p>

	<p>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p> <p>(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p> <p>라.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p> <p>(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p> <p>(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p> <p>(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p>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2. (생략)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저축은행감독국
연락처	02-2100-2696	02-3145-6785